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3. 12. 5.
사회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13년 11월 14일

나. 발 의 자 : 신현도 의원 외 6명

다. 회부일자 : 2013년 11월 19일

라. 상정일자 : 제179회 영등포구의회 2013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2013년 11월 26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신현도 의원)

가. 제안이유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을 명시
- 2) 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사유를 규정
- 3)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유를 규정
- 4) 위원장의 직무와 회의 등을 명시
- 5) 의견청취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이태선)

- 본 제정조례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2. 3. 17 시행됨에 따라 법 제30조에 근거하여 ‘영등포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을 보면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위원의 임기 및 위촉해제 사유를 명시하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유와 위원장의 직무, 회의 운영, 의견 청취 등에 관하여 규정함.
- 지적재조사사업은 100년 전 작성한 종이 지적도 등을 그대로 사용하여 토지경계가 일치 하지 않아 이웃 간 경계분쟁 및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초래되고 있어 이러한 잘못된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주민의 불편과 사회갈등을 해소하고 경제적 효율성 제고를 위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고자 2030년까지 진행되는 중장기 국가사업임.
-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하여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 대상, 지목의 변경, 조정금의 산정 등 사업추진과 관련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특별법에서 명시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신현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61
----------	-----

발의연월일 : 2013년 11월 일
발 의 자 : 신현도의원 외 명

1. 제안이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을 명시함.(안 제2조, 안 제3조)
- 나. 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사유를 규정함.(안 제4조, 안 제5조)
- 다.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유를 규정함.(안 제6조)
- 라. 위원장의 직무와 회의 등을 명시함.(안 제7조, 안 제8조)
- 마. 의견청취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안 제11조)

3. 개정안 : “별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다. 합 의 : 부동산정보과, 총무과, 기획예산과 합의

라. 입법예고(2013. 10. 29 ~ 11. 4) 결과 : 의견 없음

마. 타구제정 : 서울시, 동작구, 성북구, 은평구, 중랑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법 제12조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 대상
2. 법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
3. 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2호의 위원은 해당 사업지구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1. 소관업무 담당국장
2. 해당 사업지구의 동장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심의·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경우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
2.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3.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전심의회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를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구 소속 공무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련 법 령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 ① 시·군·구의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 소속으로 시·군·구 지적재조사 위원회(이하 "시·군·구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시·군·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12조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 대상
2.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
3.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시·군·구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시·군·구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시·군·구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군수 또는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시·군·구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해당 시·군·구의 5급 이상 공무원
2. 해당 사업지구의 읍장·면장·동장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⑥ 시·군·구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⑦ 시·군·구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그 밖에 시·군·구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